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56 호

2000 년 11 월 25 일 토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99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부의안전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500호(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501호(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 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503호(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관련 규칙개정(안)입법예고공고) -----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504호(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공고)-----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506호(인천광역시남동구불용물품매각공고)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공고 제2000-7호(물품구매입찰공고) ----- 15

중양·시행정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203호(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1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499호

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의거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전명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공고기간

- 2000. 11. 21 ~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 종료시까지

3. 기 타

- 부의안전의 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기획감사실(☎453-2050)에 비치 열람(공람) 가능합니다.

2000. 11.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5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1.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2000. 8. 28. 수입증지 판매제도가 계약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및 주민존중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조문간에 상충된 내용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수료의 고액등 증지로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 적용범위를 명시 완화(안 제3조)
- 판매인의 의무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9조)
- 판매인의 자격요건,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조항 삭제(제9조,제12조)
- 판매소의 위치지정 사항을 수요와 판매구역을 고려토록 개정 (안 제10조)
- 지정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의 해지로 개정 (안 제11조)
-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계약제가 되도록 함
- 직장금고의 판매수익금 관리 조항을 삭제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00년 12월 10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62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중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수수료의 고액등 증지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로 한다.

제5조1항중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기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④항을 신설한다.

“(판매인 계약등)①증지는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닌 ~~원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판매 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고자 신청한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안와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1항중 “구청장이 지정하는”을 삭제한다.

제11조2항중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삭제한다.

제12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중 “직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를 “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지정의 취소)①구청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를 “(계약의 해지)구청장은 판매인으로부터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를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로 한다.

제16조의 “판매 또는 판매인신고”를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의무”로 한다.

제21조1항중 “제5조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을 “제5조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계기사용 증지대금의 납입은”로 한다.

제21조 2항중 “별지제10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를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로 한다.

제26조1항중 “증지를 반환하여”를 “판매인은 증지를 반환하여”로 하고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를 삭제하고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 자는”로 한다.

제26조3항중 “제17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1,별표2”를 [별지1] 과 같이하고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2] 와 같이하고 “별지제2호서식,별지제8호서식”을 [별지3] 과 같이 하고 별지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501호

무단방치차량강제폐차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이전(폐차)명령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기간까지 자진이전(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매각)하고 아울러 동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0년 11월 24일 ~ 2000년 12월 3일까지 (1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00년 12월 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 814 - 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184번지 ☎ 442 - 6660

○ 기전산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 814 - 44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서울8후4571 외 22대

강 제 처 리 대 상 차 량

연번	강제처리대상차량		강제처리 대상차량 소유주		방 치 장 소 (인천 남동구)	비 고 (견인보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주 소		
654	서울8후4571	마이티 장축	정문영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80-25	구월2동 23 주공(아) 158동 옆	
655	서울4코6790	엑셀	표광열	서울 강서 방화동 278-7 원일연립 나/201	만수2동 102-45	
657	경기83가7748	라보이동 판매차	지호진	부천 원미구 원미동 50-11	구월1동 1183-29	기전폐차 사업소
658	인천7마1688	그레이스 6번	석종일	인천 연수구 옥련 269-7 세화빌라 가/102	구월1동 1230-17 구월강리교회 뒤	
659	인천7러9908	포터슈퍼캡	김성수	인천 남구 용현동 577-32	남동공단 138블럭 1롯데	
660	서울7므6881	포터슈퍼캡	이용욱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8-5	간석3동 209	
661	경북35거4931	아벨라	안열환	경북 예천 예천 청북 383 세아임대(아) 101/204	남동공단 158블럭 8롯데	
662	전북2라8644	프라이드팝	석승조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4(서해자동차매상사)	남동공단 158블럭 7롯데	
664	경기37러6077	엑셀	유오현	부천 원미 도당동 124 복사골(아) C/316	남동공단 87블럭 10롯데 한국금기 앞	
665	충북1노2678	프라이드	이재덕	충북 충주시 안림동 237	남동공단 87블럭 10롯데 한국금기 앞	
666	인천2너6884	프랑스 1.8AT	이형조	인천 남동 만수 5-307 삼부(아) 라/307	만수1동 962-3 대림(아) 앞	
667	서울4조4386	엘란트라	주 대영유압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2-3	남동공단 146블럭 4롯데	기전폐차 사업소
668	부천바2885	CT100	최철순	부천 원미 중동 1178 미리내마을 912/801	간석3동 921-16 이의원 앞	
670	인천2모5951	에스페로 1.5MT	김일탁	인천 남동 만수 970-7 성빈다세대주택 1/202	만수1동 970-9 성빈빌라 옆	
671	서울44러7009	르망	이유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91-7	만수1동 972-8 대영빌라 앞	
672	경기37마1610	엑셀 오토매틱	김숙이	성남 중원구 은행 1149 대림골든빌라 101	만수1동 972-8 대영빌라 앞	
673	인천1모1341	에스페로 1.5.MT	김성민	인천 남동 만수 109-59 예촌빌라 가/202	만수1동 968-2 한성팬더빌라 앞	기전폐차 사업소
674	경북1루1806	르망	배관홍	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 92	간석4동 762-2 북개천주차장	
675	인천4다3885	엑셀	김인규	인천 남동 구월동 23 주공(아) 133/103	간석4동 762-2 북개천주차장	
676	인천1다9159	캐피탈	이상학	인천 부평 산곡 369-528 부광빌라 E/201	간석4동 762-2 북개천주차장	
677	서울43마3594	에스페로 1.5AT	신명규	서울 미포 연남 509-30 현대하이츠빌라 B/302	간석4동 762-2 북개천주차장	
678	서울1누3580	프라이드	이현희	서울 용산 한강로2가16-1 선인상가 2121/3244	만수5동 941-24 신태양빌라 앞	
679	경기6로2572	다마스	박춘석	부천 소사 삼곡본동 572-14	간석3동 상인천중학교 후문앞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503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관련규칙개정(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2000.1.28 (2000. 7.29시행))에 따라 종전의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동법제23조(업무의 정지처분)제3호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 요 내 용

-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1호)
- 중개업법위반시 가중하여처벌 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경감하여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4조2항3항)
- 청문절차 제도의 조항을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함(규칙안 제6조)
- 별표의 각 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4. 의 견 제 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0년 12월12일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453-2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50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자도 이용 가능함.(안 제5조)
- 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안 제6조)
- 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수탁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0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453-2352) 또는 FAX(453-2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506호

물품매각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사항

가. 매각대상 물품(관용차량)

물 품	차 명	수량	차량번호	형식및연식	사용연료	제작사	비고
화물차량	2.5톤타이탄	2	80다4296 80다4302	SL-33S 94	경유	기아자동차	

나. 입찰마감일시 : 2000. 12. 5. 12:00

입찰등록장소 : 남동구청 허가재무과

다. 입찰일시 : 2000. 12. 6. 11:00

입찰장소 : 남동구청 허가재무과

라. 예정가격 : 금4,220,000원

2.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 마감일까지 우리구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

4.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의양식)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인감증명(입찰참가신청위임장)을
첨부한 위임장

5.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예정가격이상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금고귀속사유

-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 기일내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국고귀속조치 합니다

8.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로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현물인도 및 명의이전을 완료한다

마. 만일 위기일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구 일반회계에 귀속조치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찰자는 물품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응찰하고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허가재무과 재산관리팀(032-453-22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 1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공고 제2000 - 7호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도서구입
- 품목 및 수량 : 아동도서외 다수(별지 구매내역 참조)
- 입찰방법 : 총액입찰(최저가 낙찰제)
-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일로부터 15일, 만수6동사무소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장소 : 2000년 12월 2일(토), 13:00 만수6동사무소
- 입찰일시 및 장소 : 2000년 12월 4일(월) 10:00 만수6동사무소
- 본 입찰은 현장참여 입찰로 실시(상시 및 우편입찰 불가)

2. 도서구입금액 : 44,363,600원(부가세포함)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
- 도서출판판매업, 도서유통업, 도서판매업의영업행위를 하는자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 5/1000이상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시 구비서류(신청서류)

- ①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④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법인일 경우) 1부, ⑤입찰보증서 : 면제대상제외
- ※ 인천광역시에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업체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및 ①항서류

8. 기타유의사항

- 본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우리동에 비치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도서납품시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서배열 및 바코드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프로그램 (바코드스캐너포함)을 추가비용없이 동시에 설치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의 1.5%)를 소화해야 합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 만수6동사무소 (☎ 453-2814)

2000. 11. 22.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6동경리관

중앙 · 시행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20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인천대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000. 10. 30(인공 제405호)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14일간 공람공고한 인천 도시계획시설(공원:인천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녹지조경과(☎ 440-3675), 공원관리사업소(☎ 466-7282), 남동구청 도시지적과 (☎ 460-0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0. 11.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운연동 판모산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가. 종 류 : 공원(도시자연공원)
 - 나. 명 칭 : 인천대공원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 가. 공원의 총면적 : 2,943,680㎡
 - 나. 사업시행면적 : 2,912,500㎡
4.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공원관리사업소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1997. 10 ~ 200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토지 : 장수동 227-8번지("별첨") - 지장물 : 장수동 343-1번지내 수목("별첨")
 - (※ 기타 공원에 편입토지 및 저촉되는 지장물 변경사항 없음 :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토지 : 장수동 227-8번지("별첨") - 지장물 : 장수동 343-1번지내 수목("별첨")
 - (※ 기타 공원에 편입토지 및 저촉되는 지장물 변경사항 없음 : "생략")